

제 2 절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에 대한 관세

1. 부록 1(칠레의 관세철폐계획)에 “즉시”, “3년”, “5년”, “7년”, “10년” 그리고 “13년” 유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칠레의 한국산 수입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일정에 따라 철폐된다.

연간 관세 감축 백분율

유형	발효일	05.1.1	06.1.1	07.1.1	08.1.1	09.1.1	10.1.1	11.1.1	12.1.1	13.1.1	14.1.1
즉시	100%										
3년	25%	50%	75%	100%							
5년	16.7%	33.3%	50%	66.7%	83.3%	100%					
7년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10년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유형	발효일	10.1.1	11.1.1	12.1.1	13.1.1	14.1.1	15.1.1	16.1.1	17.1.1
13년	0.0%	12.5%	25.0%	37.5%	50.0%	62.5%	75.0%	87.5%	100%

2. 부속서 1(칠레의 관세철폐계획)에 “E” 유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칠레의 한국산 수입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지 않는다.